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49

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정성호·최기상·김정호

김남희 · 안규백 · 이연희

윤후덕 · 임미애 · 박희승

차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,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, 그리고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을 그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상의 금융기관 전체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(안 제87조제3 호).

법률 제 호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제3호 중 "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를 "금융기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7조(자료제출요구권) 한국은행	제87조(자료제출요구권)
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	
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	
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	
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	
수 있다. 이 경우 요구하는 자	,
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자	
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	
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	
정하여야 한다.	<u>.</u>
1.・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속하	3
지 아니하는 자로서 「금융산	
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	
제2조에 따른 <u>금융기관 중 자</u>	<u>금융기관</u>
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자	